

고성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5기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2. 27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제2의견국관련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수를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명칭변경
 - 당 초 : 고성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
 - 변 경 : 고성군제2의견국범군민추진위원회
- 위원회의 위원수 조정
 - 당 초 : 50인 이내
 - 변 경 : 30인 이내

3. 참고사항

- 도 자치13060-469('98.10.28) - 지방자치단체 「제2의견국」 추진지침
- 행정자치부 행건12209-13('98.12.2) - 「제2의견국」 추진지침
- 입법예고 : 불필요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”를 “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중 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”를 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50인이내”를 “30인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